

#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013~23 |
|----------|---------|

|       |               |
|-------|---------------|
| 제출일자  | 2013. 04. 10. |
| 제 출 자 | 조선제 의원 외 8인   |

## 1. 제안이유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나.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제5조)
- 다.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마. 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자주적인 위생관리,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0조)
- 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업자의 정보공개촉진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사. 농가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1)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 나. 예산 조치 : 미편성
- 다. 집행부의견조치 : 반영(대상범위 확대)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 2013. 4. 16. ~ 4. 22.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불임참조

##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구매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구매·유통 또는 판매하는 가공사업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역할)** ①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소비자단체회원으로 참여하여 농가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제6조(농가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가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가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가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농가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가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농가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군수는 농가 식품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가 식품가공사업 심의회를 두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원예유통식품분과)가 대행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농가식품가공 사업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 농산물가공 종합센터 설치운영, 가공사업자 종합적 기술지원
-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3조(군수의 책무) ①군수는 창업과 기업 활동을 위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 ②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④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 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       | 연도 | 1차년도<br>(2013년) | 2차년도<br>(2014년) | 3차년도<br>(2015년) | 4차년도<br>(2016년) | 5차년도<br>(2017년) | 합계    |
|-----------|-------|----|-----------------|-----------------|-----------------|-----------------|-----------------|-------|
| 세출        | 국비    |    |                 | 250             | 250             |                 |                 | 500   |
|           | 군비    |    | 20              | 300             | 300             | 100             | 100             | 820   |
|           | 소계(a) |    | 20              | 550             | 550             | 100             | 100             | 1,320 |
| 세입        | 0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소계(b) |    |                 |                 |                 |                 |                 |       |
| 총 비용(a-b) |       |    | 20              | 550             | 550             | 100             | 100             | 1,320 |

### 3. 관련 의견

- 농업인 식품가공의 창업·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필요
-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사업자·소비자 모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필요
  - 센터건물 기계유지 관리비, 전문강사료, 연수 등 : 50백만원
  - 유지운영 인건비 2명 : 50백만원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만

## 관 련 법 령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산업팀) 044-201-1582, 1583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들에게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제조·가공·조리·포장·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8.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2013.3.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정책과) 044-201-1516, 151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어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일부개정]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 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 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 044-201-1532, 153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 044-201-1532, 1533

제7조(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 또는 어업 외의 종합소득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소득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품목의 점수(농업품목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상인 자
3.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업품목의 점수[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품목별 양식면적 또는 어선규모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상인 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 또는 어업 외의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9>

[제목개정 2011.9.9]